

# NEWSLETTER 678

July 15, 2022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22.07.07. 시행) - 승인사항 변경신고세관 및 한도액 조정 기준연도 확대 -

관세청은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어 변경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받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월별납부제도

#### 월별납부제도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세관장에게 신청할 때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II. 주요 개정 내용

#### 1.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신고 세관 확대(제5조 제1항)

- 주소 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변경신고대상 변경사항: 대표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현행	개정안
제5조(월별납부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① 월별납부업체는 대표자·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월별납부 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u>관할지세관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월별납부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① ----- ----- ----- <u>관할지세관장(관할지 세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기준연도 확대(제10항 제1항 제1호)

- (현재 기준)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 (기준 확대) 사유\* 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 기준확대 대상: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Contact



김성근 관세사

T 070-4353-5152  
E skkim2@esein.co.kr



성단샘 관세사

T 02-6011-3021  
E dsseong@esein.co.kr

#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